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**

**1. 제안이유**

- 지금까지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는 「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」에 근거하여 징수하였으나 부산시에서 관련조례의 해당 수수료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「사하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
- 「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」 별표1의 일부항목 표기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임.

**2. 주요내용**

- 별표1 구분란의 [인가·허가, 신고·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 등]에 제12호 신고체육시설업을 신설
- 제9호 항목 중  
제9-1호를 제10호로,  
제9-2호를 제11호로 하고  
제10호를 제13호로 함.

**3. 관계법령**

- 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, 조례 별표1의 항목표기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으로
- 신고체육시설업의 경우 1999년 1월 18일 「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업무처리 권한이 시·도지사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, 처리수수료는 「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」에 근거를 두고 징수해 오다

부산광역시에서 2007년 1월 31일 공포한 개정조례에 신고체육시설업 수수료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「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」에 신고체육시설업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
- 항목오류 정정내용은 별표1[인가·허가, 신고·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 등]의 9호 「수산관계」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9-1호 「부동산중개업 관계」와 9-2호 「석유판매업 관계」는 「수산관계」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
  - 9-1호는 10호로
  - 9-2호는 11호로, 독립된 항목번호를 부여하고
  - 12호에는 신고체육시설업을 신설하면서
  - 10호는 13호로 항목번호를 순연시키는 것임
- 이상과 같이, 본 개정안은 신고체육시설업의 처리권한과 수수료징수 근거를 일치시키고, 일부 잘못 표기된 항목번호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**참고사항**

□ 신고체육시설업 종류 : 14종

· 수영장업, 체육도장업, 당구장업, 체력단련장업, 골프연습장업,  
무도학원업

· 요트장업, 조정장업, 카누장업, 빙상장업, 승마장업,  
종합체육시설업, 썰매장업, 무도장업 ▷ 우리구에는 없음

□ 우리구 업소수 : 6종 240개소

□ 2006년 신고건수 : 46건 (수수료수입 920,000원)

붙임 1. 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

2. 부산시의 신고체육시설업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협조요청 공문